"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."

기술자료-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내용 제조업

주요개정사항	현행규정	개정내용	시행
□ 법률(법) 제13906호			
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제도 신설 (신설)	- 미만 사업자은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	- 50인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언·지도하도록 함 -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(제16조의3제항)	30인~50인미만 2018. 9. 1 20인~30인미만 2019. 9. 1
직무교육 의무 주체 명확화 및 직무교육 대상 확대	- 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	-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(제32조제1항) - 이에 수수료 납부 주체 및 직무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또한 사업주로 명확히 규정(제66조제1항제2호, 제72조 제4항제3호, 제72조제5항제4호)	2016. 10. 28
□ 대통령령(시행령) 제26985호			
「이동식크레인」「고소작업대」 안전검사 대상추가	- 프레스·전단기 등 12종 유해위험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- 산업용로봇, 컨베이어 2017. 10. 31까지	-「이동식크레인」「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」를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함 (제28호의6)	2016. 8. 18
50인미만 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교육 실시	-「도매업」「숙박및음식점업」50인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교육 실시	- 50인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(별표 1) · 신규 규제임을 감안 기준교육시간의 1/2이상 실시 · 3년간 규제 재검토 기간을 설정 (2018. 12. 31까지)	2016. 8. 18
석면조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	-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함유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함 - 조사 미실시시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	- 석면조사 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 금액은 1차 위반에 한하여 공사금액의 5%를 기준으로 차등화하되, - 최소 및 최대금액을 설정하여 일반석면조사 10~100만원, 기관석면조사 중 개인소유 단독주택은 50~500만원, 그 밖의 경우는 150~1,5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 (별표 13)	2016. 2. 17 시행전 위반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름
석면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금지 제도 정비	- 청석면, 갈석면, 악티노라이트석면, 안소필라이트석면, 트레모라이트석면 등 5종의 석면은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지정 - 백석면 및 그 함유제품은 제조 또는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로 지정	- 석면안전관리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함(제29조, 제30조) - 제29조제10호에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중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삭제(제29조)	2016. 2. 17

"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."

기술자료-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내용 제조업

주요개정사항	현행규정	개정내용	시행
□ 대통령령(시행령) 제26985호			
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대상 확대	- 고용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화학물질은 제조·수입자의 유해성·위험성 보고서 제출이 면제됨	- 고용부장관이 공표한 "명칭, 유해성·위험성 및 연간 제조·수입량 이하로 제조·수입한 물질"만이 유해성·위험성 제조 대상 제외 (제32조제4호) - 시행규칙에서 제조·수입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종류 규정	2016. 2. 17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
공정안전관리 대상추가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	- 공정안전관리(PSM)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유해·위험물질의 양을 판단할 경우 "제조·취급·저장량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"	- 저장용기에 보관중인 유해·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·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·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(합산 금지)하여 산정 (별표10)	2016. 2. 17
□ 고용노동부령(시행규칙) 제150호			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도 개선	-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는 제조·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와 시험성적서(3종)등 관련서류를 고용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함 - 고용부장관은 제출된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시설설치, 보호구 구비 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·통보하여야 함	- 화학물질 특성 및 제조 수입량을 감안하여 시험성적서를 차등제출(별표11의4) - 45일전까지에서 30일(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2일) 이내로 제출기한 변경(제86조제1항) - 고용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(또는 14일 이내) 조치사항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함(제86조제4항) 등	2016. 2. 17 제86조 제1항은 16. 5.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
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제도 개선	- 공정안전보고서 제출·심사·확인 후 동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점검 등 차등관리 (P등급 4년에1회 점검)	- 우수(P)등급으로 확정된 사업장도 감독·기술지도 등의 실시결과 이행수준·이행불량한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직권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음 * 직권 이행상태평가 대상 기준은 고시에서 정함(시행규칙 제130조의7제2항)	2016. 8. 18
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합리화	- 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②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임	- ①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(이 경우 밤 12시 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)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(시행규칙 제98조제2호 관련 별표 12의2)	2016. 2. 17

기술자료-2	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내용	제조업

주요개정사항	현행규정	개정내용	시행
□ 고용노동부령(시행규칙) 제150호			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유효기간 적용 제외	- 산안법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수입량이 100kg미만인 경우 고용부장관의 확인을 받드면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(화평법)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(화평법의 경우 변경등록이 있을 때까지 유효) - 양법간의 효력기간 불일치로 혼란 초래	-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제89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(1년간)적용을 제외 (시행규칙 제89조)	2016. 2. 17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의 면제 대상	- 신규화학물질이 일반소비자 생활용인 경우, 연간 수입량이 소량(100kg 미만)인 경우,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면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 면제되며 -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결정 또는 등록면제를 확인받은 경우 고용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	- 종전 유해화학물질법(화평법으로 개정됨)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산안법상 유해성·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(시행규칙 안 제89조의3)	2016. 2. 17
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와	- 고용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이 면제됨	- 고용부장관이 공표한 "명칭, 유해성·위험성 및 연간 제조·수입량 이하로 제조·수입한 물질"만을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(시행규칙 제91조)	2016. 2. 17 시행일 이후 접소되는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
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기 단축, 민간전문가 범위확대 및 확인생략 근거 마련	-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(기존 설치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의 확인시기는 심사완료후 6개월 이내) - 민간전문가가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을 아니할 수 있음	- 기존 설치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의 확인시기를 심사완료후 3개월로 단축 - 안전보건진단 등이 수행된 경우 확인을 생략가능(추후 고시 개정예정) - 민간전문가의 범위에 관련 자격화(화학안전기술사, 화공기술사 등) 및 화공 안전경력 보유자 등 추가(관련 고시 규정) (시행규칙 제130조의6제1항)	2016. 8. 18 시행일 이후 심사받은 건 부터 적용

"작업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."

기술자료-2	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내용	제조업

주요개정사항	현행규정	개정내용	시행
□ 고용노동부령(시행규칙) 제150호			
공정안전보고서 보존기간 개선	- (시행규칙) 사업주는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 결과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	-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에서 계속 보존하도록 함 (시행규칙 제130조의4제3항)	2016. 2. 17
유해인자 분류기준 개정	-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GHS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물리적 위험성(16개)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(12개로)으로 분류	- GHS분류기준 개정에 따라 유해인자 분류상에 오존층 유해성 물질을 추가 (시행규칙 제81조제1항 관련 별표11의2)	2016. 2. 17
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개선	-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우려가 있는 유해인자(13종)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그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	- 화학물질 6종*의 허용기준 값을 국제수준과 부합하게 설정 *니켈(불용성 무기화학물), 벤젠, 이황화탄소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트리클로로에틸렌, 포름알데히드 - 톨루엔-2, 4-디이소시아네이트의 명칭을 톨루엔-2, 4-또는 2, 6-디이소시아네이트로 변경 - 유기화합물은 ppm, 금속화합물은 mg/㎥ 허용기준 단위 통일 (시행규칙 제81조4 관련 별표11의3)	2016. 8. 18
□ 고용노동부령(안전보건규칙) 제144호			
계단 안전난간대 설치방법	-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13조에 따라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	-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㎝ 이하로 설치된 경우, 중간난간대 설치 생략 가능 (안 제13조제2호)	2015. 12. 31
밀폐공간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	- 사업주는 통풍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·용단작업을 하는 경우, 가스농도 측정, 환기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	- 밀폐공간 작업시 공기호흡기(송기마스크)의 착용은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지급·착용토록 함(안 제629조)	2015. 12. 31